

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 현 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
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
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
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
서) 현행 「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」 제9
조는 “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
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시 자치구·공공기관 및
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

□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

라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여 자치구·공공기관 이외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요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